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5. 18) 상정
-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5. 18)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남 상 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개정(법률 제9174호, 2008. 12. 26. 공포, 2009. 4. 27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21205호, 2008. 12. 31.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
- 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조례 제2375호, 2009. 2. 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업지원관련 비영리법인,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을 추가로 규정하고,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능 보유 민간기업에게 대부하는 일반재산 대부료의 효율을 정함.(안 제28조제3항제4호, 신설)
- 기업지원관련 비영리법인,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일반재산

대부료의 요율을 정함.(안 제28조제4항제6호,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01호
의결년월일	2009. 5. 21. (제152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5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개정(법률 제9174호, 2008. 12. 26. 공포, 2009. 4. 27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21205호, 2008. 12. 31.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조례 제2375호, 2009. 2. 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업지원관련 비영리법인,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,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대부하는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함.(안 제28조제3항제4호, 신설)
- 나. 기업지원관련 비영리법인,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함.(안 제28조제4항제6호, 신설)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잡종재산”을 “일반재산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며, “행정재산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행정재산 및 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18조, 제19조제1항·제2항, 제20조 및 제21조 중 “행정재산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중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·제2항·제3항 및 제5항 중 “행정재산·보존재산”을 각각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, 제4장의 제목 및 제24조 중 “잡종재산”을 각각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5조 및 제29조제1항과 관련한 민간기업에 대부하는 경우. 다만, 본사를 부천시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1,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.

제2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업지원관련 비영리 법인,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

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“잡종재산”을 각각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잡종재산”을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행정·보존재산</u>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 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4. <u>잡종재산</u>의 용도변경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대장가액 <u>2천만원</u> 이하 재산 의 취득·처분</p> <p>4.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<u>2천만원</u> 이하의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에 대한 용 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행정재산 및 보존재산</u></p> <p>제18조(관리 및 처분) 재산관리관 은 관리하는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 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, 환</p>	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4. <u>일반재산</u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<u>3천만원</u> ----- -----</p> <p>4.-----<u>3천만원</u>----- ----- <u>행정재산</u>에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행정재산</u></p> <p>제18조(관리 및 처분) -----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, 해당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·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9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<u>행정재산·보존재산</u>을 사용·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1.~7. (생략)</p> <p>제21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의 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-----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<u>행정·보존재산</u>의 위탁관리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에 따라 사용·</p>	<p>제22조(<u>행정재산</u>의 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<u>행정·보존재산</u>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<u>행정·보존재산</u>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잡종재산 대부의 준용) 사 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 및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 사용수 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 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23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장 잡종재산</p>	<p>제4장 일반재산</p>
<p>제24조(연고권 배제)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 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 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연고권 배제) 일반재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~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~3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 략) 1.~5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~② (현 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4. 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」 제25조 및 제29 조제1항과 관련한 민간기업에 대부하는 경우. 다만, 본사를 부 천시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1,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기업지원관련 비영리 법인,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<u>잡종 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~4 (생략)</p> <p>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<u>잡종 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 (생략)</p>	<p>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-----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~4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<u>잡종재산</u>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----- <u>일반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잡종재산</u>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41조(신탁의 종류) 영 제48조에 따라 <u>잡종재산</u>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·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(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)으로 한다.</p>	<p>제41조 (신탁의 종류)----- -----<u>일반재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